

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

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6. 7.

1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, 공직생활의 만족도와 근무의욕을 높이하고자 함.
-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휴가 사용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재직휴가 휴가일수 확대(안 제21조제9항)
- 나.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에 관한 내용 개정(안 제21조제9항)
 - 기존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별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향상을 도모하고,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맞춰 특별휴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, 기존 재직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던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임.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에서는 특별휴가에 관하여 같

은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개정사항은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향상과 안정적인 공직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